

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■ 윤건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2831호)

2024. 11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박재유

목 차

I . 윤건영의원 대표발의(제2202831호)	1
1. 제안경위	1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3. 검토의견	2
가.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및 해당 금지행위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(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6조제2항 신설 등)	2

I. 윤건영의원 대표발의(제2202831호)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윤건영의원 등 10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8. 14.

다. 회 부 일 : 2024. 8. 16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,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,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,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6조제2항 신설 등).

3. 검토의견

가.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및 해당 금지행위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(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6조제2항 신설 등)

현행	개정안
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(생략) ②·③ (생략) 제56조(과태료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·징수한다.	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5의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</u> 6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5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제49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③ -----제5호까지, 제6호----- ----- -----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법 제49조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금지행위¹⁾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금지행위 중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²⁾을, 그 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³⁾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, 해당 금지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.

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경우 시민들의 안전에

1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2.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
3.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
4.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)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
5.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·유통·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2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5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~2. (생략)

3.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

3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56조(과태료) ①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·징수한다.

위험을 줄 수 있으나, 현행법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, 「경범죄처벌법」 제3조제1항제23호⁴⁾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 부과만 가능한 상황임.

도시공원 등은 시민들이 휴식과 산책 등을 제공하는 공간이며,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의 이용이 빈번한 장소로서, 이들이 안전하게 휴식과 산책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입법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.

한편, 개정안은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‘국토교통부령’으로 위임하고 있는데, 현행법 제49조제1항제6호⁵⁾에서는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‘국토교통부령’이 아닌 ‘대통령령’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.

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공원 내 야구·골프연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현재 공원이용실정에 부합하지 않으며, 「경범죄처벌법」 및

4) 「경범죄처벌법」

제3조(경범죄의 종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(科料)의 형으로 처벌한다.

23. (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)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

5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~5. (생 략)

6.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「형법」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한 상황으로, 금지행위의 현실적인 필요성 및 타 법률에 근거한 처벌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581